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93
----------	--------

제출년월일 : 2003. 02. 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확대 위촉
하고자 함.

☐ 주요골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함(안제3조제1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940-4428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이 평 자
	청소년담당	이 용 재
	담 당 자	권 대 훈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u>15인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u>20인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확대 위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 중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 위원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른 것임.
- 이렇듯 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나 조직 기타 운영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적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 특히, 내용면에서도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청소년육성등 각종 청소년 지방정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육성 장기계획수립과 시책조정협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과제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능한 한 지역 사회의 각계 단체대표나 전문인사를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시행일 2003.10.01

第13條 (地方靑少年委員會) ①靑少年育成등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地方靑少年委員會를 둔다.<개정 1995.12.29>

②地方靑少年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개정 1995.12.29>